[별지 제12호 서식] <신설 2025.8.11.>

[앞면]

접수번호				

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심사신청서

※ 선택사항에 √표 하세요

이 용 자 (본인)	성 명		생년월일	(남/여, 세)
	주 소			
	전화번호		휴대폰 번 호	
신 청 인 (대리인)	성 명		생년월일	(남/여, 세)
	주 소		관계	
	전화번호		휴대폰 번 호	
신청내용	아이디 홈페이지이용			
	요청사항			
구분	교통약자 유 형 (☑ 선택)	□ 장애 (□ 중증 □ 경증) 장애유형( )		□ 노약자
		□ 임산부(출산예정일:)		□ 기 타( )
	휠체어	전동□ 수동□ 미이용□	의사소통	가 능 □ 불가능 □
	보조인	있음□ 없음□	도움여부	무도움□ 부분도움□ 완전도움□

※ 완전도움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인이 반드시 동승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 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귀하

[비고]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

210㎜×297㎜

[뒷면]

신청서 작성 안내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용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단, 3급 장애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제출)

나.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등급 1~3등급 판정을 받은 자

다.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

라.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
마.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(단, 진단기간을 명시하며, 명시된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 가능)

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, 법정대리인, 보호자, 이용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.

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가. 신분증 사본

- 장애인은 「복지카드」, 국가유공자는 「국가유공자증」, 재외국민.외국인은 여권 또는 「국내거소신고증」.「외국인 등록증」,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

나. 전문의의 진단서

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확인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[뒷면]